

## 조 례 안

# 심 사 보 고 서



**거 창 군 의 회**  
[총무위원회]

# 목 차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1 |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[ 행정 과 ] | 1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
##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3. 12. 20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2. 15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2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 
(2023. 12. 18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 권해도]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,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, 세종사무소 근무, 인구증가 업무, 창포원 국가정원, 산림레포츠파크 운영, 여성친화도시 조성, 노후 상수관망 정비,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·신규·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정원 조정함(안 별표 4)
  - 1) 총정원: 변동없음
  - 2) 부단체장 직급 상향: 4급 감1, 3급 증1

- 기능인력 재배치, 현원 대비 초과정원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
  - 1) 본청: 6급 이하 증6
  - 2) 사업소: 6급 이하 증1
  - 3) 면: 6급 이하 감7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조례개정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에서 인구 5만 이상 군의 부군수의 직급을 ‘지방부이사관’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군 정원조례를 변경함과 동시에
-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7조 관련)

| 기관별<br>직급별        |          | 총계     | 본청         | 의회 | 직속기관 |            |     | 사업소      | 읍  | 면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| 소계   | 농업<br>기술센터 | 보건소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총 계               |          | 796    | 366<br>360 | 20 | 149  | 76         | 73  | 42<br>41 | 42 | 177<br>184 |
| 정무직               |          | 1      | 1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일반직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| 759    | 360<br>354 | 20 | 119  | 46         | 73  | 41<br>40 | 42 | 177<br>184 |
|                   | 3급       | 1<br>0 | 1<br>0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급       | 4<br>5 | 3<br>4     |    | 1    |            | 1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5급       | 39     | 15         | 3  | 6    | 4          | 2   | 3        | 1  | 1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6급<br>이하 | 715    | 341<br>335 | 17 | 112  | 42         | 70  | 38<br>37 | 41 | 166<br>173 |
| 별정직<br>(6급 상당 이하) |          | 1      | 1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연구직<br>(연구사)      |          | 7      | 3          |    | 3    | 3          |     | 1        |    |            |
| 지도직<br>(지도사)      |          | 28     | 1          |    | 27   | 27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|